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어음거래약정서

(CP직접 매입용)

약관폐지일 : 2024년 4월 30일

20 년 월 일

인감대조

(갑)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인)

주 소

(을) 성 명 (인)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 소

개별방식

한도방식

이 약정서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갑” 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자유금리기업어음(CP)의 직접매입 기타 어음거래에 관한 약정으로 을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약정서 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을은 갑에 대하여 현재와 장래에 부담하게 될 어음거래에 관한 금 _____ 원정 및 이에 따른 이자, 지연 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채무를 이 약정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 2 조 어음채무와 여신채무의 병존

- 을이 발행한 어음에 의하여 채무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음채무 또는 어음상의 금액을 여신거래 약정금으로 한 채무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갑의 이행청구를 받더라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이 약정서에 의하여 갑이 취득한 을의 발행어음의 효력에 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을은 어음상의 금액을 여신거래 약정금으로서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변제합니다.

제 3 조 이자 및 위약금 등의 계산

- 이자율은 연 _____ %로 정하고, 제20조에서 정한 거래기간 동안 매 _____ 개월 단위로 매입하며 이자는 어음기간동안 선 지급 합니다. 향후 을의 대주주지분 변동 및 갑이 판단하기에 투자위험을 가중시킬만한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은 보증어음으로 전환하거나 상환을 하기로 하며 필요시 갑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개매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추가부담하기로 합니다.
- 을이 이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약정금액에 대하여 잔여기간동안 _____ %의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주)한국씨티은행

CR-A-594 (2023.2.15.) 심의필 2302- 02 - 012

제 4 조 어음의 개서

어음거래에 수반하는 어음의 개서는 금합니다.

제 5 조 비용부담

-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을이 부담합니다.
 - 1. 을·을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갑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에 관한 비용
 - 2. 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 3. 담보권의 설정·변경·말소의 등기·등록에 관한 비용
 - 4.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갑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을은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에, 제3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 6 조 담보

- ① 채권 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합니다.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갑은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을은 나머지 채무가 있으면 곧 갚기로 하며, 갑은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을 등에게 지급합니다. “을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 ③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을 등과 같이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갑이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담보권실행의 방법
 - 2. 피담보채권의 금액
 -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 ④ 갑이 요청하는 경우 갑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권에 갑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어음의 환매채무

-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의 어음 금액에 대하여 갑으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을은 당연히 그 어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 1. 갑에 대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3. 지급을 정지한 때
 - 4. 가압류, 압류나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
 - 5. 파산,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 6.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거나 압류를 당한 때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하여 전부의 어음 금액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 1. 을이 이 약정서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제1항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기재된 기한 전 변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기타 채권보전상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③ 갑은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어음소지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매채무 불이행 시 갑이 한 환매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3조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 8 조 상계 등

- ① 을이 기한의 도래나 제7조에 의한 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 채무와 을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갑이 사전 구상권에 의하여 제1항의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43조의 항변권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원채무 또는 구상채무에 관하여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같기로 합니다.
- ③ 을이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갑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을을 대리하여 을이 담보로 제공한 을의 제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 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리환급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 기간은 갑이 상계나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 환시세는 갑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어음의 제시, 교부

- ① 갑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8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갑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본점 또는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갑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합니다.
- ② 갑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8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갑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갑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8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을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갑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0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갑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변제의 충당순서

을이나 을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또는 갑이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금액을 소멸시키는 데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 및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위험부담·면책조항 등

- ① 을이 발행한 어음이나 갑에게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멸실·손상 또는 연착한 경우 을은 갑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며, 갑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 ② 을이 발행한 어음이 그 어음요건의 불비나 어음을 무효로 하는 기재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권보전 절차의 불비나 시효로 인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을은 어음면상의 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 ③ 어음, 증서상의 인영·서명을 을이 신고한 인감과 거래관습상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 증서상의 인영에 위조, 변조,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을이 부담하며 어음 또는 증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④ 을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 또는 담보의 추심이나 처분에 소요된 비용과 을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협력을 의뢰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을이 부담합니다.

제12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

- ① 을은 거래에 필요한 을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갑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을은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갑이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 변경없는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갑에 대한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13조 통지의 효력

-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을이 제12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을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갑이 을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4조 회보와 조사 등

- ① 을은 그의 재산·경영·업황 또는 인수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갑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갑이 필요에 따라 을의 장부의 열람·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을은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갑의 청구가 없더라도 갑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갑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을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치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을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갑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이 약정서에 터잡은 어음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을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정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갑과 을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갑 또는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갑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연대보증인의 책임

- ① 연대보증인은 을이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 약정의 각 항목을 승인하고 보증한도액 금_____원정 및 이에 따른 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비용 등 모든 채무를 을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연대보증인은 그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위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을과 갑의 거래계속 중에는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연대보증인은 갑이 필요에 따라 담보 또는 다른 보증을 변경, 해제 또는 면제하여도 그 절대적 효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 ④ 연대보증인은 갑이 보증채무를 청구하기 전에는 을의 갑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갑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권리유보

을이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갑이 일부분 행사 또는 기일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갑이 이 약정서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 감액·정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에서 정한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감액으로 인한 한도초과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 가.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공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른 당해기업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 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부적절/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있는 매스미디어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로 확인될 때
 - 마. 채무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한 때
 -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20조 거래기간

이 약정은 갑과 을이 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효하며 _____년_____월_____일까지로 합니다.

제21조 약정의 수정

이 약정의 수정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합니다.

제22조 진술 및 보장, 기한 전 변제의무 등

- ① 을은 이 약정체결일 및 각 거래실행일에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 1. 을은 그 설립준거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 2. 을은, (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나) 자기명의로 자산을 소유하고, (다) 이 약정에 따른 채무 기타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라)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며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3. 을은 이 약정 및 이 약정과 관련한 모든 서류들을 체결, 교부하고, 그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업 내부의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4. 을은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유효,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이러한 인허가상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 5. 이 약정에 따른 을의 의무는 유효,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으며, 이 약정의 제조건 및 법률에 따라서 유효,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습니다.
 - 6. 을에 의한 이 약정의 체결, 교부 및 이행과 이 약정에 따른 을의 지급은 (가) 을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고, (나) 을의 정관에 위배되지 않으며, (다) 을이 당사자이거나 을의 자산에 효력을 미치는 어떠한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당해 계약상 채무불이행사유를 구성하지도 않습니다.
 - 7. 을의 재정상황 또는 을의 이 약정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조사, 소송이나 행정절차 또는 중재가 제기될 우려도 없습니다.
 - 8. 을은 이 약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였거나 합리적으로 갑에게 제공하였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을이 아는 한 그러한 정보는 정확합니다.
 - 9. 을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각종 지급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있습니다.
 - 10. 을은 각 여신실행일에 을 및 을의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 영업, 재무상황 및 운영에 중대하게 불리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② 을은 이 약정에 따른 여신실행일에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전의 변제 사유
 - 2.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기재된 사유
 - 3.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각 사유
- 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1. 을이 이 약정 상 채무와 관련하여 갑에게 제공한 보증, 담보 계약 및 신용보강약정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을이 법원의 최종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있는 후에 그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을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법하게 위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을이 이 약정 상 확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을이 이 약정에 따라 제공한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5. 을이 이 약정 외에 다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약정에 따른 거래의 실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갑은 그로 인한 영업상 기대 이익의 상실 등 을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 동의합니다.
- ⑤ 을이 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갑이 손해, 손실, 비용 또는 채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갑에게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23조 기타특약사항

을 : (인)
 연대보증인 : (인)
 연대보증인 : (인)

을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을	(인)
---	-----

(수입인지 첩부란)